

『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

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의원입니다.

『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,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제공에 대한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탈원화 이후 정신질환자들은 자립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과 서비스의 부족으

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재입원하거나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,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, 제도적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

이에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치료 및 재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.

-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,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, 취업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지역사회 거주지원 사항,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,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, 자립생활교육과 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
본 의원은 조례 제정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마련하였고,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